

#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및 그 밖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등에 관련된 법령이나 그 밖에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 그 성질상 본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에서 정한 발명 이외의 것으로 교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내부발명자와 외부발명자를 말한다.
4. “내부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하고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이외의 자로서 교직원과 공동으로 발명을 한 사람을 말한다.
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그 밖의 신지식재산권과 이와 관련하여 연구수행 등을 통해 획득한 기술 등의 노하우를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6. “보상금”이라 함은 내부발명자 보상금과 외부발명자 보상금을 말한다.
7. “내부발명자 보상금”이라 함은 지식재산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등 기술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금(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대해 제21조에 따라 내부발명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외부발명자 보상금”이라 함은 외부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9. “순수익금”이라 함은 지식재산권의 양도나 기술이전 등의 기술료 중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관련 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권리의 승계)** ①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며,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 ②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와 지분만 승계한다. 단, 외부발명자가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그 권리를 가진다.
- ③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자유발명의 경우 내부발명자로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절차를 거쳐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 제2장 지식재산권 심의, 평가, 대행 등

**제5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①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본 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심사 및 승계 여부
2. 직무발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신청에 대한 승계 여부 <개정>
3. 지식재산권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선정 및 취소 결정
4. 지식재산권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 취소 결정
5. 평가기관 평가대상 선정
6. 그 밖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

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식재산권 평가기관)** ① 평가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기술거래기관 중 매 2년 단위로 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위원회에서 평가하기로 결정한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고 위원회는 그 결과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단, 필요시 위원회에서는 평가기관에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권 대행기관)** ①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행기관 등록제를 통해 대행기관을 선정한다.

② 대행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여부는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 단, 직무발명 신고자가 대행기관을 추천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은 산학협력단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제3장 신고 및 출원

**제8조(발명의 신고의무)** ① 교직원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명서류 일체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 산학협력단장은 발명 인터뷰 시행내규에 따라 진행한 발명 인터뷰의 등급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발명의 국내 및 해외 지식재산권 승계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교외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국내 지식재산권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없이 내부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직무발명의 승계거부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및 등록신청 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출원 및 등록신청)** 산학협력단장은 제8조에 의거하여 권리를 승계하면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내부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출원 및 등록신청, 등록 등 관련경비)** ① 발명자는 정부와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신청, 등록 등 관련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할 경우, 그 과제의 예산에 경비를 간접비 항목으로 계상하여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을 충당하여야 한다.

② 센터 연구과제 관련 국내 및 해외 지식재산권(PCT 국제출원 포함) 관련 경비는 해당 센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한다.

1. 센터 연구과제라도 산학협력단 간접비 사용 내규에 의하여 간접비 예산을 배정받지 않은 경우
2. 센터 사업 또는 센터 관리 연구과제 종료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중간사건 및 등록비용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가. 국내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장이 지원여부 결정

나. 해외 지식재산권은 발명 인터뷰를 실시하여 위원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③ 해외 지식재산권(PCT 국제출원 포함) 관련 경비를 발명자가 일부 부담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의 기술이전 체결시 발명자 부담분을 발명자 보상금에 산입하여 지급하며 센터 부담분은 지급하지 않

는다.

④ 외부발명자 또는 외부발명자의 소속기관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출원 및 등록신청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대로 해당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내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장이, 해외 지식재산권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지식재산권 관련 경비는 지식재산권 수임료 지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유지)**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 중 등록 후 5년 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은 포기하거나 내부발명자가 원할 경우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이전 계약이 유효하거나 기술이전이 논의 중인 지식재산권의 경우 산학협력단 명의로 유지한다. 단, 내부 발명자가 재직 중이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하지 않는다.

② 산학협력단에서 포기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그 발명자가 연차료를 부담하여 산학협력단 명의를 유지할 경우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 등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기술이전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이를 포기 또는 양도할 수 있다.

## 제4장 기술실시 계약

**제13조(사전협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 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 내외부인(이하 “실시자”라 한다)이 사용, 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내부발명자와 함께 실시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정부(공기업 출연포함)의 사업관계 법령 등으로 기술실시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4조(계약체결)** 산학협력단장은 실시자와 협의하여 기술이전조건을 설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발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5조(계약조건)** 기술이전의 계약조건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시권의 종류 :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 연구비의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전용 실시권 등을 설정할 수 있다.
2. 실시기간 :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타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의 비교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기술료 :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기술료와 기술실시에 따른 경상기술료 등으로 구분한다. 단, 특허 또는 특허를 포함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선급기술료는 필수항목이며 최소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제16조(특례)** 실시자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실시자와 관련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판단하여 기술료를 일부 인하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기술료를 50% 이상 인하하여 재계약할 경우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실시자가 본 대학교의 기술자체가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 사항과 내부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은 이전기술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비밀유지를 철저히

히 하여 제3자가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④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이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기술보증 및 배상)** 산학협력단 및 내부발명자는 실시자와 기술이전 계약 시 본 대학교의 기술 수준 이상으로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본 대학교의 귀책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대한 조항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 제5장 기술료 수입 및 사용

**제19조(기술료 수입의 구분)**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정부주도 연구사업에 따라 참여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술료
2. 일반수탁연구 및 그 밖의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산업계수탁연구, 자체연구 등 제1호와 관련없는 경우의 기술료

**제20조(기술료수입의 사용)** ①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징수된 기술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수탁 및 그 밖의 과제에 준하여 사용한다.
2. 일반수탁연구 및 그 밖의 연구사업과제 : 보상금 지급, 교직원의 복리증진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② 연구비 재원이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일반수탁연구 및 그 밖의 연구사업과제로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제21조(사용절차)** 수입이 발생하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보상금 등 관련 비용을 집행한다.

## 제6장 보상금의 지급 등

**제22조(내부발명자 보상금의 지급)** ① 지식재산권의 양도나 기술이전 등으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한 해당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관련 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순수익금에 대해 직무발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등으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 70% (내·외부발명자에게 지급하는 실시 보상금), 산학협력단 30%의 비율로 배분하여 지급한다.

② 정부주도연구과제 또는 발명자와의 별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 지급은 정부의 지급 기준이나 계약에 따른다. 단, 제1항의 보상금 지급비율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내부발명자가 제1항의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④ 기술이전에 기여한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 순수익금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보상금 지급자는 제외하며, 발명자, 산학협력단장이 내부기여자별 기여도를 선정 평가하여 산학협력단장은 지급대상자 및 금액 등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제23조(보상금의 지분)** ①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발명자는 발명을 신고할 때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산학협력단과 다를 수 없으며, 지분을 잘못 신고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보상금 지급시기)** ① 보상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산학협력단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② 보상 수혜자는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30일 이내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6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가 모인(모방에 의한 발명)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장 보칙

**제27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신청, 심사, 심판 및 소송 그 밖에 처분 또는 기술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② 발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인해 본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의 유지)** 지식재산권 담당자, 평가기관 및 대행기관 관계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그로인해 본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15. 1.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식재산권 수임료 지급 기준액

| 항 목  | 세 부 항 목                 |                      | 착수금(원)       | 성사금                      |
|------|-------------------------|----------------------|--------------|--------------------------|
| 일반출원 | 특허                      | 기본료(명세서 20면, 청구항 1항) | 500,000      | 착수금의 80%                 |
|      |                         | 독립항 추가료              | 50,000       |                          |
|      |                         | 종속항 추가료              | 25,000       |                          |
|      |                         | 도면(도당)               | 15,000       |                          |
|      |                         | 명세서 1면 추가시           | 5,000        |                          |
|      | 실용신안                    | 기본료(명세서 20면, 청구항 1항) | 400,000      | 착수금의 80%<br>(기술평가유지 결정시) |
|      |                         | 독립항 추가료              | 50,000       |                          |
|      |                         | 종속항 추가료              | 25,000       |                          |
|      |                         | 도면(도당)               | 15,000       |                          |
|      |                         | 명세서 1면 추가시           | 5,000        |                          |
| 디자인  | 기본료                     | 250,000              | 착수금의 80%     |                          |
| 상표   | 기본료                     | 150,000              | 착수금의 80%     |                          |
| 특수출원 | 분할출원                    |                      | 원출원 착수금의 30% |                          |
|      | 우선권 주장출원                |                      | 300,000      |                          |
| 중간사건 |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                      | 200,000      | 국내 / 해외                  |
|      | 심사청구                    |                      | 50,000       |                          |
|      | 우선심사 신청                 |                      | 100,000      |                          |
|      | 재심사 청구                  |                      | 200,000      |                          |
|      | 거절결정 불복심판               |                      | 500,000      | 사전 협의                    |
| 관 리  | 심판, 서치, 감정, 계약서, 기술평가 등 |                      | 협의           |                          |
|      | 출원인 명의변경(양도)            |                      | 30,000       |                          |
|      | 권리자 명의변경(양도)            |                      | 70,000       |                          |
| 해외출원 | 개별국 출원                  | 1개국당                 | 800,000      | 착수금의 80%                 |
|      | PCT 출원                  | 국제출원                 | 1,000,000    |                          |
|      |                         | 국내단계                 | 800,000      |                          |
|      |                         | 한-영                  | 30,000/p     |                          |
|      |                         | 한-일                  | 25,000/p     |                          |

※ 관납료, 부가가치세, 현지 대리인의 수수료는 별도임

※ 중간수임건에 대해서는 수임료를 면제하고 성사금만을 청구하기로 함

|           |        |              |
|-----------|--------|--------------|
| 별지 제1호 서식 | 관리번호 : | 처리부서 : 산학협력단 |
|-----------|--------|--------------|

| 발 명 신 고 서   |   |  |               |   |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출원 및 등록신청  | <input type="checkbox"/> 특허 <input type="checkbox"/> 실용신안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상표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등록 <input type="checkbox"/> 저작권<br><input type="checkbox"/>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 )<br><input type="checkbox"/> 우선권주장출원 (출원일 : 20 . . . 출원번호 : ) |  |               |   |         |     |
| <input type="checkbox"/> 해외출원 및 등록신청  | <input type="checkbox"/> PCT국제출원 <input type="checkbox"/> 개별국 출원 및 등록신청 (희망국 : )  |  |               |   |         |     |
|   | 국내출원 및 등록정보   | 출원일  | 20 . . .      | 출원번호  |         |     |
|   |   | 등록일  | 20 . . .      | 등록번호  |         |     |
|   |   | 발명의 명칭   |               |   |         |     |
|   | PCT국제출원정보   | 출원일  | 20 . . .      | 출원번호  |         |     |
|   | 발명의 명칭  |  |               |   |         |     |
| 발 명 의 칭   | 국문  |  |               |   |         |     |
|   | 영문  |  |               |   |         |     |
| 신 고 자 (발명자) 정 보   | 성명(한글/영문)   | 지분(%)  | 소속(학과/연구실)    | 연락처(전화/이메일)   |         |     |
|   |   |  |               |   |         |     |
| 출 원 인 보   | 출원인   | 기관명  |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   | 지분(%)   |     |
|   |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PCT출원인  | 기관명  |               |   | 지분(%)   |     |
|   |   | 주소   |               |   |         |     |
|   |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담당자명   |               | 연락처   |         | 이메일 |
| 발 명 의 공개여부  | 공개방법  | <input type="checkbox"/> 논문발표 <input type="checkbox"/> 학술지 게재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               |   |         |     |
|   | 출원 전 발표여부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 <input type="checkbox"/> 학회발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발표(예정)일   | 20 . . . (기타 : )   |               |   |         |     |
|   | ※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학회지 등) 사본  |  |               |   |         |     |
| <p>상기 발명을 발명진흥법 및 조선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의거 신고합니다.</p> <p>덧붙임 : 1. 연구과제정보서 1부      2. 발명자정보서 1부      3. 발명요약서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신고자 (발명자)                          (인)</p> <p><b>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b></p> |   |  |               |   |         |     |

<별지 제1-1호 서식> ※ 교외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연구과제정보서   |  |   |            |             |
|---|--|---|------------|-------------|
| 센터과제 관련 유무  | <input type="checkbox"/> 있음 (센터명 : _____ ) <input type="checkbox"/> 없음   |   |            |             |
| 출원 및 등록신청 경비 처리                                     | <input type="checkbox"/> 산학협력단 간접비 <input type="checkbox"/> 센터 간접비 <input type="checkbox"/> 연구비<br><input type="checkbox"/> 기타 ( _____ ) |   |            |             |
| 주관기관명   | _____  | 연구책임자명  | 주관기관       | _____       |
|   |  |   | 우리대학       | _____       |
| 연구지원사업명   | _____  |   |            |             |
| 연구과제명   | _____  |   |            |             |
| 연구지원기관명   | _____  | 협약일   | 20 . . . . |             |
| 참여기관(기업)명 1   | _____  | 담당자<br>(연구원)  | _____      |             |
| 참여기관(기업)명 2   | _____  |   | _____      |             |
| 참여기관(기업)명 3   | _____  |   | _____      |             |
| 연구기간  | 20 . . . . ~ 20 . . . . ( 년 개월)  |   |            |             |
| 연구비(원)  | 총연구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기타( _____ ) |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협약서(계약서)<br>내용 중<br>연구성과물<br>(지식재산권)<br>소유<br>관련 조항 | 유무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             |
|   | 내용   | ※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                              |            |             |
| 협약서(계약서)<br>내용 중<br>기술이전<br>관련 조항                   | 유무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             |
|   | 내용   | ※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                              |            |             |



<별지 제1-2호 서식>

| 발 명 자 정 보 서     |              |        |         |         |
|-----------------|--------------|--------|---------|---------|
| 구 분             | 한글성명         | 지분 (%) | 소속(학과명) | 자택 전화번호 |
|                 | 영문성명         |        | 연구실명    | 휴대폰 번호  |
|                 | 관계구분         |        |         | 이메일     |
|                 | 보상금 지급계좌 정보  |        |         |         |
| 발 명 자<br>(주발명자) |              |        |         |         |
|                 |              |        |         |         |
|                 | 은행명 :        |        | 계좌번호 :  |         |
| 내 부<br>발 명 자    |              |        |         |         |
|                 |              |        |         |         |
|                 | 은행명 :        |        |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은행명 :        |        |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은행명 :        |        | 계좌번호 :  |         |
|                 | 외 부<br>발 명 자 |        |         |         |
|                 |              |        |         |         |
| 은행명 :           |              |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은행명 :           |              |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은행명 :           |              | 계좌번호 : |         |         |

※ 관계구분란에 교수, 직원, 연구원, 조교, 대학원생, 학부생, 졸업생, 외부인, 기타( ) 중 선택 표시 (중복 가능)

<별지 제1-3호 서식>

| 발 명 요 약 서   |   |      |      |      |
|---|---|------|------|------|
| 발명의 명칭  |   |      |      |      |
| 분야  | <input type="checkbox"/> 정보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료 <input type="checkbox"/> 건설·교통<br><input type="checkbox"/> 통신 <input type="checkbox"/> 화학공정 <input type="checkbox"/> 우주·항공 <input type="checkbox"/> 농림·수산<br><input type="checkbox"/> 전기·전자 <input type="checkbox"/> 화학                      천문·해양 <input type="checkbox"/> 기술정책·<br><input type="checkbox"/> 생명과학 <input type="checkbox"/> 물리학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자원              지구과학·<br><input type="checkbox"/> 보건·의료 <input type="checkbox"/> 기계 <input type="checkbox"/> 원자력                      수학<br><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적용·응용분야<br>및 시장성                                      |   |      |      |      |
| 발명의 특징  |   |      |      |      |
| 발명의 간단한<br>설명   |   |      |      |      |
| 핵심어<br>(Keyword)                                      | 제1순위  | 제2순위 | 제3순위 | 제4순위 |
| 발명의 내용  |   |      |      |      |
| ※ 기재 또는 별첨(논문 초고, 발표 준비자료 등) 바랍니다.                    |   |      |      |      |
| 선행기술자료  |   |      |      |      |
| ※ 본 발명과 관련하여 선행기술자료(특허문헌, 논문 등)가 있는 경우 기재 또는 별첨 바랍니다. |   |      |      |      |

별지 제2호 서식

처리부서 : 산학협력단

## 발명명세서

[ 작성예 ]

## 1. 발명의 명칭(영문명칭) :

ex) 핸드폰(MOBILE PHONE)

## 2.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의 첨부 시 기재)

ex) 도 1은 종래의 핸드폰을 도시한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핸드폰을 도시한 사시도  
 < 도면 주요부분의 부호 설명 >  
 10 : 본체    20 : 배터리

##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 가. 발명의 목적

(1)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일반적인 내용과 종래기술을 기재(도면이 필요한 경우 첨부)
- 종래기술의 문제점 기재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

- 종래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 기재

## 나. 발명의 구성

(1) 본 발명의 구성 설명 : 설치위치, 연결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성을 간단하게 기재

(2) 기능 및 작용 : 구성의 기능 및 작용을 상세하게 설명

(3) 실시예 : 본 발명에 따른 다양한 실시예가 있는 경우 기재

(4) 기타 :

## 다. 발명의 효과(구체적으로 기술)

- 본 발명의 구성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 기재 또는 전반적인 효과 기재

##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청구항 2】

## 5. 도면(도면이 없는 경우 생략)

【도 1】

【도 2】

별지 제3호 서식

처리부서 : 산학협력단

양 도 증

|              |     |               |        |  |
|--------------|-----|---------------|--------|--|
| 발 명 의<br>명 칭 |     |               |        |  |
| 양 도 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성 명 |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        |  |
|              | 주 소 |               |        |  |

위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포함)을 받을 권리를 예원예술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라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합니다.

20 . . . .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이전 기여자 기여도 평가서

1. 기술이전 내역

|          |                         |     |        |
|----------|-------------------------|-----|--------|
| 계 약 명    |                         |     |        |
| 기술명(특허명) |                         |     |        |
| 계약기간     | 20 . . . . ~ 20 . . . . |     |        |
| 대표 발명자   | 소 속                     |     | 성 명    |
| 기술료(원)   |                         |     | 이전 업체명 |
| 기술료 입금일  | 20 . . . .              | 기 타 |        |

2. 기술이전 기여자별 기여내역 및 기여도

| 기여자 | 소 속 | 기여도(%) | 기여내역 |
|-----|-----|--------|------|
| ○○○ |     |        |      |
| ○○○ |     |        |      |
| ○○○ |     |        |      |

※ 기여자 전체 기여도 총합은 10% 이내로 한다.

상기와 같이 기술이전 기여자별 기여내역 및 기여도를 평가하여 제출합니다.

20 . . . .

평가자 : ○ ○ ○ (인)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이전 성과 인센티브 신청서

1. 기술이전 내역

|          |                         |     |        |
|----------|-------------------------|-----|--------|
| 계 약 명    |                         |     |        |
| 기술명(특허명) |                         |     |        |
| 계약기간     | 20 . . . . ~ 20 . . . . |     |        |
| 대표 발명자   | 소 속                     |     | 성 명    |
| 기술료(원)   |                         |     | 이전 업체명 |
| 기술료 입금일  | 20 . . . .              | 기 타 |        |

2. 신청자 정보 및 기여내역

|      |  |     |  |
|------|--|-----|--|
| 성 명  |  | 소 속 |  |
| 연락처  |  | 이메일 |  |
| 기여내역 |  |     |  |

상기와 같이 기술이전 성과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20 . . . .

신청자 : ○ ○ ○ (인)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